

서울특별시회의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
운 영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11. 28. 황준환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4. 12. 2.
- 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【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황준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,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

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함(안 제3조).
-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고,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의장은 교육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며, 불이행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함(안 제7조)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제정안의 발의 배경

- 민주적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원이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·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해야 함.
-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 법령¹⁾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 그 동안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재하고 예산 지원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음. 【(8대 : 42명(3,936천원) / 9대 : 2명(347천원)】
- 이에 본 제정안은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연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.

2 교육연수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통지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안 제3조는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들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결과를 평가해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.
- 이는 매년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의원의 전문성 함양과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3 맞춤형 의원 교육연수 및 예산 지원 등(안 제5조~제7조)

-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(안 제5조)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‘의정 운영공통경비’의 5%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6조).
- 이는 획일적인 집체교육을 지양하고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.
 - 다만, 특정 의원에게 교육연수가 집중되어 예산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의원에게 교육연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.
- 한편, 안 제7조는 의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에게 그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, 불이행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연수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“이하 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(이하 “교육연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
2.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

3.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
4. 교육 종류별·분야별 대상 인원
5.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·절차
6.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
7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.

제4조(교육연수계획의 통지)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5조(의원교육연수 지원) ①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게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 지원) 의장은 의원이 교육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%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증비서류의 제출)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